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997. 5. 16 영 제15372호

## 신·구조문 대비표(건설안전관계 발취)

현	행	개	정
<p>〈신설〉 제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활동의 촉진등에 관한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고취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신설〉 제3조의 3(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3.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ol> <p>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신설〉 제3조의 4(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 단체는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③ (생략)</p>		<p>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④(생략)</p> <p>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li> <li>2. - 4. (생략)</li> <li>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li> <li>6. - 7. (생략)</li> </ol> <p>②·③(생략)</p> <p>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p> <p>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책임자 1인</li> <li>2.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li> <li>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및 관리감독자 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6인(건설업의 경우에는 7인)이내</li> <li>4.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이내</li> </ol> <p>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그 위원 중에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를 말한다.</p> <p>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p> <p>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p>	<p>⑥(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li> <li>2. - 4. (현행과 같음)</li> <li>5.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li> <li>6. - 7. (현행과 같음)</li> </ol>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①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li> <li>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li> </ol>

현	행	개	정
	<p>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신설〉 제25조의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li>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li> <li>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li> </ol> <p>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li>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li> <li>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li> <li>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7인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li> </ol> <p>③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노사협의회회의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협의회회의의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노사협의회회를 말한다.</p> <p>④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당해 노사협의회회의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노사협의회회의의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할 것</li> <li>2. 당해 노사협의회회의의 사용자위원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킬 것</li> <li>3. 근로자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할 것</li> </ol> <p>〈신설〉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회의의 의장이 된다.</p> <p>〈신설〉 제25조의 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p>		

현	행	개	정
<p>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li> <li>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설〉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p>제26조(도급금지 작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ol>	<p>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p> <p>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ol>		
<p>〈신설〉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p>제26조의 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p>제26조의3(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건설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p>	<p>제26조의 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p>제26조의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차 금속산업. 다만, 제1차 비철금속산업을 제외한다.</li> <li>2.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li> </ol>		



현행	개정
<p>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p> <p>제33조의 4(안전·보건진단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li> <li>2. 기계·기구·설비·장치·건설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li> <li>3.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li> <li>4. 유해물질 등의 사용·보관 및 저장 실태</li> <li>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li> <li>6. 보호구 및 안전보건장비의 적정성</li> <li>7. 기타 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p> <p>-----</p> <p>-----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p> <p>----- 장비 -----</p> <p>-----</p> <p>제33조의 4(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 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신설〉 제33조의 9(제재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의사의 초진소견서에 의한 진단이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이를 사망자 1인으로 본다.</li> <li>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li> </ol>	
<p>제33조의 9 (생략)</p> <p>제33조의 10 (생략)</p> <p>제33조의 11 (생략)</p> <p>제33조의 12 (생략)</p> <p>제33조의 13 (생략)</p> <p>제33조의 14(합격자 결정) ① (생략)</p>	<p>제33조의 10 (현행 제33조의9와 같음)</p> <p>제33조의 11 (현행 제33조의10과 같음)</p> <p>제33조의 12 (현행 제33조의11과 같음)</p> <p>제33조의 13 (현행 제33조의12와 같음)</p> <p>제33조의 14 (현행 제33조의 13과 같음)</p> <p>제33조의 15(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2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p> <p>제33조의 15 (생 략)</p> <p>제33조의 16 (생 략)</p> <p>제33조의 17 (생 략)</p> <p>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 (생 략)</p> <p>②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용자</p> <p>2. 재해예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자</p>	<p>② ----- 제33조의13제4항 ----- ----- -----</p> <p>제33조의 16 (현행 제33조의 15와 같음)</p> <p>제33조의 17 (현행 제33조의 16과 같음)</p> <p>제33조의 18 (현행 제33조의 17과 같음)</p> <p>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신설〉 제45조의 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p> <p>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p> <p>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p> <p>다. 기타 산업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p> <p>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p> <p>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p> <p>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p> <p>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p> <p>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p> <p>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p> <p>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p> <p>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p> <p>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 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p> <p>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p> <p>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p>			

현	행	개	정
<p>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p> <p>9.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p> <p>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p> <p>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신설〉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li> <li>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li> <li>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li> <li>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li> </ol> <p>〈신설〉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 등의 업무</li> <li>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li> <li>3.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li> <li>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li> <li>5. 직업병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또는 직업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li> <li>6. 안전보건교육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li> <li>7.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li> </ol>			
<p>제45조의2(청문) (생략)</p>		<p>제45조의5(청문) (현행 제45조의2와 같음)</p>	
<p>〈신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p> <p>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li> <li>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li> <li>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li> </ol>			